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구급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경쟁 채용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구급 대체인력(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총 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구급대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 (119안전센터)	10명	'26. 8월~12월 (약 5개월)	○ 구급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 ○ 환자 병원 이송 업무 등

※ 최종 합격일에 근무지 지정

2. 응시자격

가. (지역제한) 없음(단, 출퇴근이 가능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요 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1급 응급구조사

다. (연 령)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

※ 응시연령의 기준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라.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용 절차 및 일정

가. (채용 절차)

- 1) 서류전형(1차): 적격 심사
- 2) 면접시험(2차):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나.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 6. 23.(화)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2026. 6. 23.(화) ~29.(월) 18:00	◦ 접수: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 전자우편: pmh8594@korea.kr ◦ 등기우편 접수: 6. 29.(월) 18:00까지 도착 (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등기번호 접수일 기준) ◦ 보내실 곳: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구조구급과 ☎ 24266
서류전형	2026. 7. 1.(수)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 심사일 통보)
면접시험	2026. 7. 15.(수)	◦ 일시: 2026. 7. 15.(수) 14:00~ ◦ 장소: 도청별관 3층 전략회의실 ※ 면접 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026. 7. 17.(금)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 통보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4. 채용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의 적합 여부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

※ 제출 서류 미비(누락 등) 시 부적격 결정

나. (2차 시험) 개별 또는 집단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정요소 5가지 항목을 종합평가

- | | |
|-------------------|----------------------|
| ① 업무 지식 및 그 응용 능력 | ②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 ④ 구급업무(구급대원)에 임하는 자세 |
|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점수(총점 100점)를 집계하여 평정 점수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내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 ② (동점자 우선순위) 1. 취업지원 대상자, 2. 경력이 많은 사람, 2. 연장자 순

■ (불합격 기준)

-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3)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희망근무지가 맞지 않아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다. (우대사항)

○ 채용시험 가점 적용 사항(증빙자료 제출은 원서 접수일 기준)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점은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가점이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가산점수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다만,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 없이 적용함

5.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8월~12월 / 약 5개월(예산 소진 시까지)

나. (근무형태) 3조 1교대(당-비-휴)

다. (급 여) 시급 12,087원 ※ '26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기준단가

○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 발생 시 추가 지급 / 4대 보험 가입

라. (경력인정)

- ①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 요건으로 경력인정
- ② 소방공무원 채용으로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확정)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 유사 경력으로 인정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6. 23.(화)~6. 29.(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위 박미현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구조구급과 ☎ 24266
- (채용문의) 033-249-5132

다. (접수방법) 전자 및 등기우편

1) (전자우편) pmh8594@korea.kr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유효

2) (등기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구조구급과 ☎ 24266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한 것까지 인정함
(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등기번호 조회 시 접수일 기준)

라. (제출서류)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033-249-5132)을 통해 모든 서류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서 식	형 식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한글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PDF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PDF
④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4호 서식】	PDF
⑤	기간제근로자 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PDF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PDF
⑦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1부	-	원본
⑧	최종 학력증명서 1부		원본
⑨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PDF
⑩	경력증명서 1부	-	원본
⑪	취업대상자 증명서(해당되는 경우만) 1부	-	원본

※ PDF 항목은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 제출

7.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응시원서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는 채용 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 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응시자 현황, 합격선, 시험성적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차.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이 시험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해당없음

다.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 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보낼 때는 응시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직종	기간제근로자(구급대원)		(한자)
주 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응 시 표

2026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기간제근로자(구급대원)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번호는 문자로 개별 통보)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공고문에 게시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1) 응시번호(「※」표시란): 응시자 작성금지(원서접수 시 응시번호 부여)
- 2) 응시직종: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
- 3) 성 명: 정자로 기재
- 4)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 5) 전자우편, 전화번호: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공무직(기간제) 채용 응시자용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 집 항 목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자택), 생일, 이메일, 경력사항, 자격사항
수 집 목 적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 - 응시자 본인 및 경력·자격사항 확인, 합격 통지, 예비 합격자 선발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이 력 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기간제근로자(구급대원)	접수번호	* 미기재
성 명		생 일	* 생년은 미기재, 본인 확인용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주 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지원 자격	*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체크 ☐ <지원분야 1>, ☐ <지원분야 2>, ☐ <지원분야 3>		
우대 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체크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법정가점 사항	☐ 해당 ☐ 미해당		☐ 5% ☐ 10%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증빙 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자 기 소 개 서

※ 3매 이내 작성

1. 지원 동기와 포부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휴먼명조 12p)

2.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휴먼명조 12p)

3.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과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해당 업무 또는 과제 목표, 자원관리 방식, 목표 달성 여부와 구성원 동기부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휴먼명조 12p)

4.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목표와 목표 수립 과정/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노력의 결과와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휴먼명조 12p)

5. 직장, 학교 등의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협업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인의 역할, 견해 차이 등 갈등 극복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 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휴먼명조 12p)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때는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 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부패방지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우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생년월일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기간제근로자 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감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 집 항 목	건강에 관한 사항(신체 계측 사항, 임상검사 결과, 병력, 방사선 촬영 결과, 종합소견) 및 범죄 경력, 자격조회
수 집 목 적	채용 예정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확인 및 배치 업무 결정 참고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직무 적합성 판단이 어려워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기타 고지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공무원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포함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 집 항 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국적, 병역 사항, 학력 사항, 경력 사항, 가족관계, 자격 사항, 계좌번호
수 집 목 적	공무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고용 유지
수 집 근 거	①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및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동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②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및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 집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 집 목 적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사회보험 업무처리
수 집 근 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국민연금법」 제47조(업무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 회 보 험 업무처리	성명, 국적, 월 소득액 주민등록번호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국세청	원 천 징 수 의 무 이행	성명, 고유식별키, 생년월일, 월 소득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서약서

성명		응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생년월일		응시직급	기간제근로자(구급대원)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응시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실시하는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채용비리,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의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경우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